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 및 청년 예외 근거 마련 〉

■ 이정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9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 및 청년 예외 근거 마련	3

I. 개요

1.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면 1인 가구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 급여 실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고, 2인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더 낮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받아 역시 급여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등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년들까지 단순히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개별가구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들은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출국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 체류하였더라도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 및 청년 예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4(외국 체류자의 개별가구 제외 등) 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

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
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

2. 비정부기구(Non-governmen
tal Organization) 또는 비영
리기구(Non-profit Organizati
on)의 해외사업 또는 해외활
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해외사업 또는 해외활동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¹⁾으로 하고, 개별가구(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별가구의 예외로서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가구원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사람을 정하고 있음.

<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시행령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조사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①외국 체류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조치는 장기 외국 체류자가 부당하게 공적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②장기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조치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참고로, 기존 시행령 조항은 ①의 사례와 같이 장기 외국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개별가구 제외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2022년 개정²⁾으로 ②의 사례와 같이 장기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조치가 추가되었음.

2) 대통령령 제32711호(2022.6.21. 일부개정)

< 동법 시행 제2조제2항제2호 개정 내용 >

구분	기존	2022.6.21. 개정
기준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변경 내용	(장기체류기준 강화) 90일 초과 → 60일 초과로 강화, 및 체류 경험 추가 *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	

□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³⁾ 사업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이나 해외인턴십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업에 참여하여 6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이후 귀국할 경우, 귀국 이후 약 4개월 가량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체류자의 개별가구 제외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조사의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사람’을 정함에 있어,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등의 사업⁵⁾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해당 참여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개별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3)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4) 18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60일 가량 외국에 체류한 경우, 120일 전부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해외봉사단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직종별 전문 봉사활동 및 ODA 일경험 제공 등, 활동기간 5개월~1년(최대 2년)) 및 ODA 영프로페셔널(코이카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등 근무, 활동기간 6개월(최대 1년)) 등이 있고,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구의 해외사업·활동은 정부 간 협정 등으로 설립 및 활동하지 않아 그 활동 범위와 사업영역을 특정하기 어려움.

□ 동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이 해외 공익활동이나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귀국 이후 수급권을 다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서, 외국 체류자를 개별가구 제외하는 제도의 취지가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적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공익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청년에게는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제외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해외 공익사업 등의 참여 결과 귀국 이후 급여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하는 LH 임대주택 등 다른 복지제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귀국 이후의 보호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참가자의 경우, 외국 체류 기간 동안 체제비 및 활동지원 등을 받고, 귀국 후에는 별도의 국내정착지원금⁶⁾을 받으므로,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참가자에 대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및 탈수급 촉진 등을 고려하여 정부 해외 인턴사업 참가자 등에 대한 외국 체류기간 완화 및 의료급여 특례⁷⁾를 시행 중임.

6)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일반단원에게는 원활한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활동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을 적립하였다가 귀국후 국내정착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됨.

□ 둘째, 개별가구의 범위 및 제외 범위는 현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체류자의 개별가구 제외 및 청년 등에 대한 예외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보장범위의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군복무,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실종 등 다른 개별가구 제외 사유는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체류자에 관한 사항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 규율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로서 법률에서 그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구 형태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장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예외사유와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사업·활동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 목적의 해외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연령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사업·활동은 그 범위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예외 적용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해외체류 90일까지 보장가구원에 포함하여 기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90일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 중인 가구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함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및 참가자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 부여하고 있음.
p.11 참고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공익활동,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려는 청년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으로 60일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의료급여 지급에 대한 특례⁸⁾를 적용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해외 체류자의 부당한 급여 수령을 방지하려는 현행 규정(60일 제한)과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 취·창업자 등 해외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현행법령에서 해외 체류기간 관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정합성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①NGO, NPO 범위와 활동 적정성 등에 대한 기준 불명확, ②코이카 봉사단의 경우 현지 지원금 등 있어 중복 지원 및 타 저소득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③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은 관련 제도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경기도, 충청북도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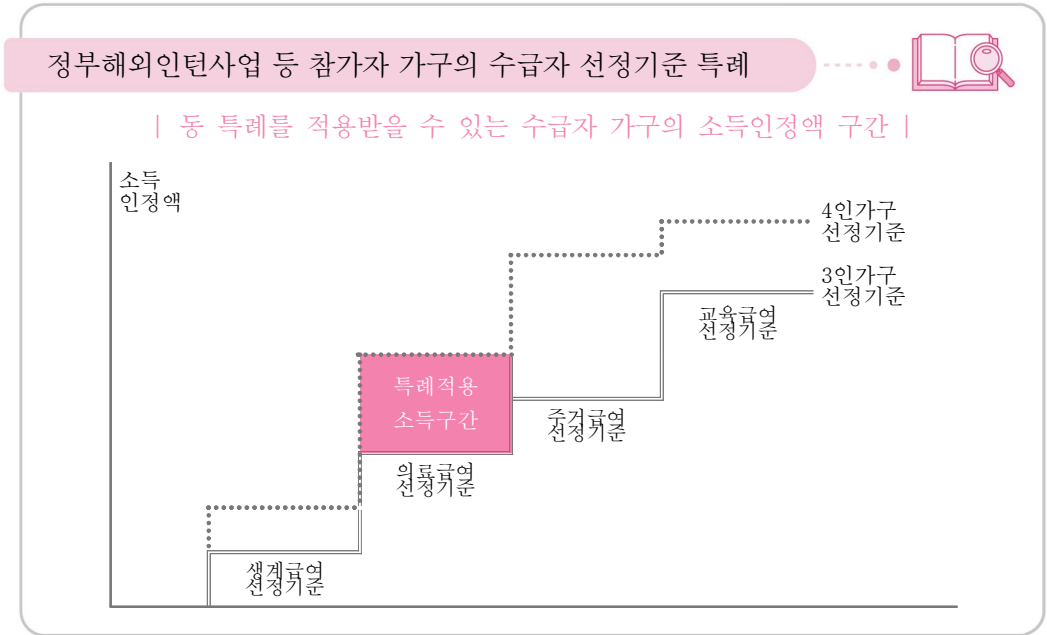
02)6788-5497

8) 해당 참가자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가구원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및 참가자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 부여

[참고]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1) 운영 기본 원칙
 -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 중인 수급자 가구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수급자 가구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일반 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 2) 적용대상
 - (1)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2) 대학졸업 필수과목인 해외실습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 졸업 필수과목여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3) 기업·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4)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대학 재학생 중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출국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3)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 예를 들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598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144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해외인턴으로 출국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가능



4) 특례 운영 방법

- (1)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해외체류 91일 제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모든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
 -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된 경우 동 소득은 제외)
 - (3)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4)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참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나머지 가구원과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지급
 -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으로 해외출국한 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외출국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기 바람
- 5) 특례기간 : 해당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기간 종료시점(귀국시점)까지

6) 특례 급여내용

- (1) 의료급여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와 나머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 (2) 해산·장제급여 :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인턴취업 소득, 항공료·체제비(월140만원 한도) 등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교환학생 재학 중 각종 소득 :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입국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으로 산정

8)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 귀국 시 보장 방법

- (1) 보장기관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는 귀국 후 즉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하도록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도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 ※ 대부분의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재 보장 실시 후, 취업여부·금융재산조회 및 공적자료 조회 등 상세조사를 통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등 결정

9) 사후관리

-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해당 가구의 기본정보에서 “특례구분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표시하고 특례기간 입력, 상담내역에 출국일 등 관련사항 명시
- (2) 특례적용 종료자의 귀국예정일을 확인하여 ‘귀국예정일 기준’으로 특례적용 종료
- (3) 해당 가구의 상담내역에 특례적용 종료일 명시
- (4) 기업,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해당 인턴사업 내용(인턴사업 지원비용, 기간, 내용, 담당자 이름, 연락처 포함) 및 참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특례 적용
- (5)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해외인턴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부터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6) 특례기간 중에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의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귀국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